



작업환경개선 (CLEAN 3D) 사업 올해 인쇄업종 집중지원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무료로 개선해주는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크린3D(CLEAN 3D)사업이 올해는 인쇄업종에 집중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원장 홍용수)은 CLEAN 3D사업을 위해 365억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인쇄업체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체로서 산재보험가입 또는 가입예정업체이며 지원범위는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된다. 또 2,000만원까지는 추가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리4%,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지원조건은 종합컨설팅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모두가 해당된다.

인쇄 경인쇄 제본업체의 경우 지원대상 설비는 출입문 및 통로의 안전조치, 동력전달부 방호조치, 기계기구 잡지,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 중량물 취급설비, 내충격 바닥재 등에 무상지원되며 프레스 재단기, 크레인 교류아크용접기, 화물용승강기 보일러 등 안전성이 확보된 위

험기계기구는 용자로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이번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면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인터넷(www.clean3D.go.kr)이나 팩스,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현지실사를 하게 된다.

(문의전화 : 3783-8326)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인정 기준

■ 안전상의 조치(CLEAN Danger)

인정 품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작업장의 안전 및 통로 구분	○ 작업장의 바닥, 통로, 출입문, 비상구 등	○ 작업장 바닥 및 통로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작업 발판, 출입문, 비상구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위험기계·기구 설비 방호조치 및 기능 적합성	○ 프레스·전단기, 가스용접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 용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공기압축기, 로울러기, 연삭기, 목재 가공용 동근톱기계 및 동력식수동대패, 산업용로봇, 절연보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단조기, 버프연마기, 용해로, 주형조형기, 다이캐스팅기, 믹서기, 소성로, 도장부스, 포장기, 보일러, 폐지압축기, 사출성형기, 벽돌·블럭성형기, 혼합기, 스크류콘베이어, 시멘트 벨트콘베이어, 압연기·압출기, 드릴링머신, 선반, 지게차, 고소작업대, 이동식작업대, 사다리, 신전기, 파쇄·분쇄기, 코팅기, 정련기, 용접작업공정	○ 해당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이 유효한 상태일 것
동력 전달부분의 덮개 설치	○ 원동기, 회전축, 차차, 풀리, 플라이휠 및 벨트 등 동력 전달부	○ 해당 동력전달부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조치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서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안전지주의 비치, 제한속도표지의 설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폭발·인화성 물질 등의 관리	○ 폭발성 물질, 발화성물질,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가연성가스, 부식성 물질	○ 폭발·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할 것
전기설비의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 전기설비	○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재해예방조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의 추락방지 조치	○ 개구부, 작업발판, 통로 등 추락위험장소	○ 추락위험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적절한 상태일 것

■ 작업환경개선(CLEAN Dirtiness)

인정 품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작업장내의 규정 온도 확보	○ 작업장내의 온도	○ 작업장내의 온도가 다음기준을 만족할 것 초정밀작업:750럭스 이상 정밀작업:300럭스 이상 보통작업:150럭스 이상, 기타작업:75럭스 이상
노출기준 미만의 소음유지 또는 보호구 착용·관리	○ 인정평가자가 소음발생역제 및 전파방지 대책을 제시한 옥내 작업장	○ 작업장내 소음유지상태가 다음 기준을 만족할 것 1일 노출시간 8hr:90dB(A) 미만, 1일 노출시간 4hr:95dB(A) 미만 1일 노출시간 2hr:100dB(A) 미만, 1일 노출시간 1hr:105dB(A) 미만 1일 노출시간 1/2hr:110dB(A) 미만, 1일 노출시간 1/4hr:115dB(A) 미만
분진 제거용 환기 시설설치 및 가동 유지	○ 저소음설비로의 대체, 차음, 흡음 조치 또는 공정·설비의 격리 등 공학적인 대책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옥내작업장	○ 차음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상태가 적절할 것
유기용제 제거용 환기 시설 설치 및 가동유지	○ 분진발생 옥내 작업장	○ 작업장내 분진관리 상태가 다음기준을 만족할 것 제1종 분진은 노출기준 : 2mg/m ³ 미만, 제2종 분진은 노출기준 : 5mg/m ³ 미만, 제3종 분진은 노출기준 : 10mg/m ³ 미만, 석면 및 기타분진은 작업장 노출기준미만, 용접작업의 용접흄 또는 분진은 노출기준 : 5mg/m ³ 미만
연 또는 특정 화학 물질제거용 환기 시설 설치 및 가동유지	○ 유기용제 취급 작업장	○ 유기용제별 노출기준 미만일 것
고열·한냉·다습작업의 적정 온·습도 유지	○ 연 또는 특정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 다음 기준을 만족할 것 - 연(무기분진 및 흡)은 노출기준 0.05mg/m ³ 미만 - 특정화학물질별 노출기준 미만
산소결핍위험 작업 안전 조치 여부	○ 고열, 한냉, 다습 작업장	○ 작업강도 및 작업 휴식시간비에 따른 노출 기준미만을 유지할 것
세척, 세안시설 설치	○ 산소결핍 위험작업	○ 작업장소의 산소농도를 18%이상 유지 및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조치가 적절할 것
	○ 분진작업, 연업무, 4일킬연 업무, 유기용제업무,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 기타 신체 또는 피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업무	○ 해당작업 또는 업무장소에 세안, 세척시설의 설치상태가 적절할 것

■ 작업공정개선(CLEAN Difficulty)

인정 품목	적용 범위	인정 기준
인력작업 감소를 위한 이동대차, 컨베이어 설치	○ 인력에 의한 중량을 취급작업	○ 요통 및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적절할 것
높낮이 조절가능 작업대 또는 의자 비치	○ 작업대 또는 의자	○ 높낮이 조정 가능 작업대 또는 의자의 비치 상태가 적절할 것
내충격성 바닥재 설치	○ 작업장의 바닥	○ 작업장 바닥은 적절한 재료로 설치되어 있을 것
무거운 전동공구에 보조기구 등 사용	○ 무거운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 단순반복작업에 사용하는 전동공구에는 지지대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있을 것